

의안번호	2216270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6. 1. 30.
추계번호	26E033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7억원 등 2027~2030년까지 4년간 총 68억원(연평균 1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4년 연장(제106조제1항 후단, 제111조제1항)	-17	-17	-17	-17	-68	-17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 제1호 관련 부분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11조제1항(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)	-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목적으로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 제1호 관련 부분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11조제1항(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의 면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연장된 적용기한을 고려하여 2027~2030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는 전기의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제도임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6억원, 2025년 21억원(전망) 등으로 나타남

[표 2]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에 따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(전망)
합 계	19	14	15	16	21
부가가치세	4	5	5	5	6
교통·에너지·환경세	13	8	9	10	13
교육세	2	1	1	1	2

자료: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추계기간 동안 2021~2025년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치인 17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조세지출 실적이 증감을 반복하는 등 일관된 추세가 없음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연평균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2025년 전망은 신고·진도비를 고려한 수치로 잠정 실적치로 볼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7억원 등 2027~2030년까지 4년간 총 68억원(연평균 1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제106조 제1항 후단, 제111조제1항제2호)	-17	-17	-17	-17	-68	-17
부가가치세	-5	-5	-5	-5	-20	-5
교통·에너지·환경세(개별소비세)	-11	-11	-11	-11	-42	-11
교육세	-1	-1	-1	-1	-6	-1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